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6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중 풍납캠프를 폐쇄하고 관악캠프는 복합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영어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교양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등의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을 서울특별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변경함(안 제1조)
- 다.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중 풍납캠프를 삭제하고, 서울자유시민대학과 모두의 학교를 추가함(안 제2조 및 별표 1)
- 라.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평생교육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 마. 이용료 면제대상을 청소년 중심에서 취약계층 일반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경험 기회를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이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표 2 부터 별표 4까지).
- 바.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새로 조성하는 평생교육기관(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포함)의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나 평생교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사. 평생교육기관의 시민운영·참여를 제도화하여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시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1. 4. 8. ~ 4. 28.)결과: 의견있음(별도 첨부)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능)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리·운영
2.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과 지원
4. 공연, 전시회 등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와 교육
5. 평생학습도서관 등 운영

6. 평생교육 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공
7.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8. 기타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운영 및 화단, 분수, 조각 등 시설 관리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시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기관 중 모두의 학교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평생교육기관 중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이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르고,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의 이용료 등은 별표 3의 범위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4.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반환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2. 수강개시 이후: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이용료

제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나 평생교육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지

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의 정서·교양 함양,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계획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운영과 시민편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수강료 등 이용비용에 대한 시민의견 제출
4. 그 밖에 평생교육기관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영어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

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와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평생교육기관인 “서울 영어·창의마을 수유캠프”, “서울 영어·창의마을 관악캠프”로 본다.

제3조(이용료 등의 징수·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이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제2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종로구 <u>송월길 52</u>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확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강동구 <u>고덕로 399</u>	"
서울자유시민대학 은평학습장	은평구 <u>은평로 245</u>	"
서울 영어·창의마을 수유캠프	강북구 <u>삼각산로 43</u>	세계시민 역량강화, 체험기회 제공
서울 영어·창의마을 관악캠프	관악구 <u>낙성대로 70</u>	
모두의 학교	금천구 <u>남부순환로 128길 42</u>	시민주도 프로젝트형 평생교육모델 개발, 확산

[별표 2]

서울자유시민대학 이용료(학습비) 등 징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징수기준	학습비	비 고
특별 강좌	· 특별 기획 과정 · 공공성 중심 과정 (서울학, 시민학 등)	무 료	
정규 강좌	· 5주 과정 (2시간*5회)	10,000원	시간당 1,000원 기준
	· 10주 과정(대학연계 과정 포함) (2시간*10회)	20,000원	
전문 강좌	· 전문가역량 과정	30,000원	
	· 학점은행제 과정	30,000원	학점은행제 승인 기준
기 타	· 교재비 및 기타 학습재료비	실 비	사용 후 반환하지 않음

※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의 이용료 등 징수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 3]

서울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등 징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이 용 료	비 고
숙 박	정 규 반	5박 6일	340,000원 이내	개인·단체
		4박 5일	16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박 3일	96,000원 이내	개인·단체
	특 별 반	5박 6일	4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방학캠프	12박 13일	800,000원 이내	개인·단체
		9박 10일	6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주 말 반	1박 2일	120,000원 이내	개인·단체
비숙박	방 과 후	1개월	3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당 일 반	1일	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정 규 반 (1일 6시간 기준)	5일	14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3일	9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일	7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료 등 징수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면제·감면 대상 및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및 기 준
면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 면 (50%)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4)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소지한 가정이 이용하고자 할 때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6)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단,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은 적용 제외)

※ 학습비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격요건 취득일 기준으로 학습비에 대한 면제와 감면을 적용함  
(소급신청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세출예산(지원 비용) 발생

※ 모두의 학교는 이용료 무료, 서울자유시민대학은 감면대상 변동 없음('20년 총 이용대상 41,138명 중 감면대상 201명, 총감면액 1,974천원)

※ 서울영어및창의마을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시의 예산지원 없이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 인건비·운영비 자부담)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시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2019년 기준으로 산출(2020년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정상운영 불가)

- 감면 증가액 : 감면 지원대상 확대(10% 증가 추정 시)에 따른 지원금 증가분
- 감면 지원금(예산집행액) : 1,271,999천원 / 감면 이용인원 : 12,311명
- 감면 1인 지원액(사회적배려계층 감면 지원금/사배층 이용인원) : 103천원

구분	이용인원	총 감면지원금	감면 증가액
감면지원 대상 확대 (10% 증가)	13,542명(12,311*1.1)	1,394,826천원 (103천원*13,542명)	1,394,826-1,271,999 =122,827천원

※ 서울 영어 및 창의 마을의 주 이용대상자는 청소년으로 감면대상(경로우대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외국인근로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 확대에 의한 비용추계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부서명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성명 : 노은영 ☎2133-399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p>국민재난안전 총연합회</p>	<p>○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공동 사업추진 등)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 내 재난안전교육 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운영시설 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기관내 시민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확보, 평생교육기관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에 대한 교육 비중 확대를 제안함</p>	<p>○ 미반영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예 따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재난안전교육 시설 구축 등 귀 제출의견은 평생교육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전교육기관 지원 및 재난안전교육 관련 소관부서에 지원 및 활용 협조요청 요함</p>